

2014년 9월 22일

이안 버니
캐나다 수석대표
캐나다 오타와

이안 버니 차관보 귀하,

본인은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8장(투자)과 제9장(국경 간 서비스무역)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캐나다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- (1)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자원재활용과 저공해 자동차 배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한 일정 조치를 논의하였다. 양 당사국은 1)제품과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의무, 2)재활용 이행계획과 그 결과의 제출, 3)적용 가능한 재활용 부과금의 납부, 4)일정 비율의 저공해 자동차 배급 의무, 그리고 5)저공해 자동차를 배급할 계획의 제출 및 승인에 관한 이러한 조치가 제8.8조(이행요건)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.
- (2)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기업이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영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. 양 당사국은, 자유무역협정의 목적상, 그러한 제한이 제9.4조(시장접근)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.
- (3)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특정 지리적 지역 내에서 교육기관의 설립, 증설 또는 이전에 적용 가능한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(법률 제11690호, 2013.3.23)의 기존의 규정을 논의하였다.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9.4조(시장접근)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.
- (4)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, 또는 외국정부나 외국 공인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 고등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논의하였다.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가 제8.3조(내국민 대우) 및 제9.2조(내국민 대우)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.
- (5)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「주세법」(법률 제11873호, 2013.6.7)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주류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종류와 양에 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하였다.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는 「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세

계무역기구 협정」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 제8.8조(이행요건)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.

- (6)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철도운송 회사가 회사 폐쇄 또는 청산을 포함하여 서비스 공급을 중단할 능력을 통제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.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9.4조(시장접근)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.
- (7)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대한 규정을 논의하였다.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는 제9.4조(시장접근)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.

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/서명/

최경림
대한민국 수석대표